

☆ 윤용섭, 이효원, 조정, 김세동 등의 국가경찰위원회, 세금 축내는 개돼지 우롱 모임

^ 보낸사람 김명호 <mkim2525@naver.com>

받는사람 김성은 김세동 박형명 윤용섭 이효원 조정

참조 신상욱

2026년 4월 13일 (월) 오전 8:36

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. 입증은 다음 실례,

2026.3.19일 은평경찰서의 [\[주차장법\] 위반과 불법 건축물](#)에 대하여, 서울시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(1AA-2603-0768486)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오승표가 처리담당으로 배정되었는데,

오승표는

1. "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렵다"는 이유로 연장하고는
2. 처리기관 및 담당을 은평경찰서의 이주철로 변조
조작 과정: 3.27일 [담당 오승표](#) => 3.29일 [담당 공란](#) => 3.31일 [담당 이주철](#) => [조작된 민원 처리결과](#)
3. 하여, 조작 증거 제시하며 오승표 기피 및 징계 신청했더니, 기피신청 묵살하며 오승표 자신이 담당... [똥단지 같은 답변](#)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, [불가침의 국민 권리 보호](#) 의무의 경찰이 국민 권리 짓밟았어
4. 더 기막힌 건, "소신 있다"고 소문난 경찰청 감사관 이은애에게 오승표 상관,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 징계하라고 신고했더니 이은애 이년도 서울시경찰청에 이송했고 결국 또 다시 오승표가 배정된 거야 => [4.9일 오승표 개소리](#)



"경찰 수사에 조작이 필수"란 건 20년전에 알았지만, => <https://seokgung.com/seokgung/log.htm> 조작이 이렇게까지 일상 보편화된 줄은 몰랐지.

결론:

[경찰법] 제5조(권한남용의 금지) "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,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켜야 하며,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

[경찰청법] 제10조(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등) 제1항 제2호 "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·개선에 관한 사항"은

똥폼 잡기위한 걸만 번드르르한 포장이고
경찰위원회는 "국민 착취 목적으로 고용된 용역"

=====

통찰 인지력 없는 [石학계](#)



=> [개돼지 몰이용으로 전략](#)